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64 호

2002 년 7 월 15 일 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2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3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4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5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6호(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7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
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3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8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9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4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0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4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1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립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43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4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4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5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6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52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7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	-----	7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73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	74
--------------------	--------------------------	-------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2-320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87
----------------------	----------------	-------	----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별표3”의 총무과 및 청소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총무과	2	<u>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 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단, 주민등록표의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 하 되, 구청장 및 출장소장도 처리 할 수 있다.)</u> <u>가. 주민등록증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u> <u>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u>	<u>주민등록법제17조의8</u> <u>동법 제18조의2</u>
청소과	2	<u>불법쓰레기지도단속 (과태료 부과)</u>	<u>폐기물관리법제63조</u>
	3	<u>무단방치쓰레기처리</u>	<u>폐기물관리법제13조</u>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 개정사유

- 동기능 전환 전면 시행후 일부 위임사무 조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함은 물론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 위임사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체계와 능률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써
- 구민을 위한 질적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구민 본위 행정을 구현코자 함.

○ 주요골자

- 총무과의 위임 사무중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를 신설(안 제2조중 별표3)
 - 청소과의 위임사무중 “불법쓰레기지도단속(과태료 부과), 무단 방치쓰레기처리”를 신설(안 제2조중 별표3)
-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3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4조제1항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의원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결과를 합산한 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제2항중 “간사를 둔다”를 “간사 및 서기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를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본문중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를 “건축법제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의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제13조 제목의“(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및 영 제25조”와 “회화·조각·공예 조형예술물 등의”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건축주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으로 하고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을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심의결과의 통보 및 공고) 구청장은 영 제24조의2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확인등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24조제5항의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 : 1,000분의 1이상

②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에 따른 구조례 정비사항으로 미술작품의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토록 하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상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3조)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안 제4조)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한 심의위원의 임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심의위원의 임기제한을 완화함(안 제4조)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세무서장에 통보토록 하고 공보에 공고토록 함(안 제13조의 2)
 - 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시 성실히 협조토록 함(안 제14조)
 -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관리의무 등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명시(안 제14조의2)
 -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4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재산 중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 하고, 동조 제4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각각 하며, 동조 제2항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3조 제목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본문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 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각각 삭제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공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급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

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29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증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제23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3조의2 단서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대부료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신규대부등(재계약포함)부터 이를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및 시 조례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축소(안 제7조제3항)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 마련(안 제25조제2항)
 -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 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안 제28조 제2항)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안 제28조 제2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는 청문제도 도입(안 제28조의 2)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사용·수익허기,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 규정(안 제25조의2)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을 재산관리관이 함(안 제37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2. 문화공보관계
중 (3) 유기장업 영업허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3)내지(10)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4) 체육시설업신고를 (11)체육시설업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2001. 9. 2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으로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변경포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컴퓨터게임장업이 유통관련업 중 일반게임장으로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 삭제(제2조 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중 컴퓨터게임장업 조항 삭제)
-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통관련업 등록·변경 등록·신고·변경신고 등 4개 수수료 항목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3)~(6)신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2.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업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 유통관련업 등록(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1건	25,000원	
(4)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1건	15,000원	
(5) 유통관련업 신고(복합유통·제공업)	1건	20,000원	
(6)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복합유통·제공업)	1건	10,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8)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9)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10)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1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건	5,000원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6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6호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단,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없다.

제3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처분의 통지등) ① 구청장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3호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에 의거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 대통령령(1994.12.23 제14447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토록 되어있어, 구·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대통령령(1993.3.12 제16179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구(군)간 조례제정시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하여 각 구(군)간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 이익이 없도록 함

○ 주요골자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행 위	부 과 기 준	관 련 법 규
1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 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 - 2년초과 2년6월이내 - 2년6월 초과	토지가격의 5/100 (한도액 : 1백만원)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2백만원)	법제33조의2 제2항제6호
2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2백만원)	법제33조의2 제2항제6호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처분을위한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부서명
	주 소		
	기 한	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제목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1. 귀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 및 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 통지용)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영수필 통지서
(구청 통보용)영수필 통지서
(개인 보관용)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 사항		
금액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 과태료는 국토 이용관리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 사항		
금액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납일 부인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 사항		
금액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 합니 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수납일 부인	세입징수관 귀하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 사항		
금액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납일 부인	취급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원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 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자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원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과태료수납부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2조(정의) 제2호중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한다.

제4조(설치등) 제2항중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구청장이 정한다”를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한다.

제5조(기능) 제1항중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문제 토론회,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교양강좌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및프로그램)제2항중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사항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동장이 정하되”로 하고, “구청장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로하며, 동조 제4항중 “시설 등의 계획을”를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으로 한다.

제7조(운영)제2항중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제1항중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등의 결정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제3항중 “시설 등의”을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2항중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을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으로 하고, “분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반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중 “운영 등에”를 “운영에”로 하고,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6조(기능)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위원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제1항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⑤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경제계, 관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을 균형 있게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연령, 직업)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고문)를 삭제하고, “제20조 내지 제25조”를 “제19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제20조(해촉)제1항중 “위원이”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로 하고, “해촉할 수 있다” 를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 로 하며, 동조 제4호를 제5

호로 하고, 동조 제5호의 “기타 위원으로서”를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조 제2항중 “위원의 임기는”를 “위원 및 당연직 아닌 고문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21조(회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중 “위원은”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과 자율성 확대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제5조)
 -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지원 등(제7조)
 -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진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제10조)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대책(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가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회대(제15,16조)
 -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제17조)
 -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제18조)
 - 위원회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제17조2항및제20조1항)
-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8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판매가격”을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등의”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를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로 한다.

제10조 제4항중 “노랑색”을 “적색”으로 하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 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제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거나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특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인쇄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를 실시하거나 공공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참여한 기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탁판매업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2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④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운영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중 “이를 판매가격”를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고, 지정 판매소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별표3" 제목 "폐기물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을 "폐기물봉투가격등의 산정방법"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및 판매소공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및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9%로 한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공급가격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판매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구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유치 등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미비점 보완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판매이윤 보장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 쓰레기봉투 매수(환불)에 따른 주민의 편리성 제고
-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를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의함(안 제9조제3항)
 - 일반용봉투중 10리터, 20리터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고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색상을 적색으로 규정하여 가연성 봉투의 특성을 강조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 쓰레기봉투에 구경영사업을 위하여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하여 봉투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판매이윤 보장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2조의2)
 - 쓰레기봉투 매수(환불)시 구에서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봉투 환불에 대한 주민의 편리성 제고(안 제14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동조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2호 하며, 동조에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도시국장
3. 특별회계 경리관 : 도시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특별회계는 경리 목적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수한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한 회계라는 점에서 회계 목적의 추진을 분명히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집행·관리에 있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 8조의 2의 특별회계 징수관 및 특별회계 경리관을 신설(안 제8조의2 1항, 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동조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2호 하며, 동조에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도시국장
3. 특별회계 경리관 : 도시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특별회계는 경리 목적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수한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한 회계라는 점에서 회계 목적의 추진을 분명히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집행·관리에 있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 8조의 2의 특별회계 징수관 및 특별회계 경리관을 신설(안 제8조의2 1항, 2항)
-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7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동조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2호 하며, 동조에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도시국장
3. 특별회계 경리관 : 도시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특별회계는 경리 목적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수한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한 회계라는 점에서 회계 목적의 추진을 분명히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집행·관리에 있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 8조의 2의 특별회계 징수관 및 특별회계 경리관을 신설(안 제8조의2 1항, 2항)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2] 를 [별 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초과현원 해소 대책 일환으로 직급에 대한 일부 상계조정을 통하여 직급 및 직종 불부합등으로 인한 직권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는 물론
 - 정원의 타력적인 적의 조정을 함으로서 행정 내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함과 동시에 행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중 일반직 8급2명, 9급2명, 기능직 9급2명,
10급2명등을 정원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기능직 9급1명, 10급1명 각각 복
수화 조정(안 제2조중 별표1)
 - 구본청에 두는 직급별 지방 공무원 정원중 일반직 8급2명, 9급2명, 기능직 9
급2명, 10급2명 등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기능직9급 1명, 10급1
명 각각 복수화 조정(안 제2조중 별표2)
- *****

[별표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직종별	계급(등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668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574	
	3급	1	행정1
	4급	5	행정2, 시설1, 행정·임업1, 보건·의무1
	5급	38	행정24,토목1,의무3,건축1행정·지적1,행정·토목1,행정·보건·환경2,행정·전산2,행정·화공·기계·환경1,행정·지적·토목·임업1, 행정·토목·임업1
	6급	84	행정53,통신1,지적2,토목3,건축3,임업1,행정·토목·임업1, 토목·임업1,세무·행정7,행정·환경1,행정·환경·화공1,행정·보건2,행정·농업1,행정·기계1,행정·화공1,행정·토목·건축1,보건·약무·간호1,행정·보건·간호1,보건·간호·의료기술1, 토목·건축1
	7급	170	행정99, 토목15, 전산3, 전기3, 건축11, 세무8,환경4 보건3, 지적3, 농업1, 기계1, 화공1, 수산1, 간호4, 임업1, 의료기술1, 사회복지6, 통신·전자통신1, 보건·약무1,환경·화공1,임업·지적1,축산·수의1
	8급	172	행정90, 전산1, 건축9, 토목11, 세무22, 환경5, 보건8, 화공2, 기계3, 지적5, 농업1, 수산1, 축산1 임업1,전기1,간호2,의료기술2, 사회복지6, 보건·환경1
	9급	104	행정51 전산3, 세무6, 보건2, 임업3, 토목3, 사회복지32, 행정·세무2, 보건·환경2

[별표2]

구본청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직종별	계급(등급)별	정원	직렬별정원내역
합계		41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346	
	3급	1	행정1
	4급	3	행정1, 시설1, 행정·임업1
	5급	15	행정10, 토목1, 건축1, 행정·지적1, 행정·토목1 행정·보건·환경1
	6급	61	행정36, 통신1, 건축3, 지적2, 토목3, 행정·세무6, 행정· 환경1, 행정·환경·화공1, 행정·보건2, 행정·농업1, 임업1, 토목·건축1, 행정·화공1, 토목·임업1, 행정·토목·건축1
	7급	114	행정56, 토목15, 전산3, 전기3, 건축10, 세무8, 환경3, 보건2, 지적3, 농업1, 기계1, 화공1, 수산1, 임업1, 통신·전자통신1, 환경·화공1, 사회 복지2, 임업·지적1, 축산·수의1
	8급	111	행정42, 전산1, 건축8, 토목11, 세무22, 환경5, 보건3, 화공2, 기계2, 지적5, 농업1, 수산1, 축산1, 전기1, 임업1, 보건·환경1, 사회복지4
	9급	41	행정19, 전산3, 세무6, 보건1, 임업3, 토목3, 행정· 세무2, 사회복지2, 보건·환경2
별정직	소계	1	
	7급	1	수행비서1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5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제7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2호 병력
동원 훈련소집”을 “제7조 병력동원 훈련소집(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으로 하고, 동조 “제13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 “제
1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9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5호 내지 제32호”를 “제11호 내지 제28호”
로 한다

9. 전시특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병무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개정이유
- 국가위임사무중 병무 사무의 병무청 소관으로 환원되는 사무의 폐지와 병역법 개정에 따른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관련된 일부 병무 사무의 신설을 위한 관련실과의 사무 분장을 적의 조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자치과의 병무 사무중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등을 제외한 사무를 폐지하고, 전시특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병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6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자치구의 공유재산”을 “남동구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4호와 동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중 “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7호내지 제8호”를 동조동항에 “제5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3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8호”를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6조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를 내지 제8호”를 동조 “제6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분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신탁수익권)을 각각 신
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별지 제23호의2(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
- 개정이유
-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신설(안 제33조의2)
 - 기부채납, 매각신청, 교환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안 제12,13,16조)
 -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세분화하여 관리(안 별지제5호서식)
- *****

【 별 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설 계 기 준

- 아래 기준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1. 사무실 (단위 : ㎡)

구 분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과장	담당	직원
구	99	33	-	16.5	6.0	5.0
동	23	9.9	-	-	6.0	5.0

2. 부대시설

1) 회의실

(가) 구

○ 대회의실 $0.6\text{㎡} \times (\text{본청공무원수} + \text{동근무공무원수}) \times 80/100$

○ 소회의실 및 상황실 $3.3\text{㎡} \times (6\text{급이상수} + \text{동장수}) \times 80/100$

(나) 동

○ 회의실 $3.3\text{㎡} \times (\text{공무원수} + \text{동장수}) \times 80/100$

2) 전화교환실(동 제외)

(가) 좌석식

< 작 계 >

좌석수	1	2	3	4	5	6	7	8	9	10
면 적 (㎡)	5.0	6.9	6.9	10.2	10.2	14.9	17.2	20.2	24.1	24.1

※ 1좌석 : 수동회선 30회선

(나) 자동식(100회선 기준)

○ 기계실 : 50㎡이상 ○ 지자재실 : 9.9㎡이상

○ 중계대실 : 13.2㎡이상 ○ 휴게실 : 13.2㎡이상

○ 휴전지실 : 9.9㎡이상

3) 숙직실 : $3.3\text{㎡} \times \text{숙직인원}$, 최소면적 9.9㎡

4) 안내 및 수위실 : $1.7\text{㎡} \times \text{인원수} \times 1/3$, 최소면적 6.6㎡

5) 변소 및 세면장 : $0.3\text{㎡} \times \text{공무원수}$, 최소면적 7㎡

6) 주차장

○ 대형차 : 대당 20㎡

○ 중형차 : 대당 15㎡

○ 소형차 : 대당 13.2㎡

+ 출입지역

7) 운전원 대기실 : $1.6\text{㎡} \times \text{운전원수}$

8) 식 당 : $0.9\text{㎡} \times \text{공무원수} \times 1/3$ (동제외)

9) 교통통신부문(현관, 복도, 계단)

○ 각실 면적의 20~40%선

< 삭 계 >

현

행

기

정

안

10) 민원대기실 : $5\text{㎡} \times \text{민원담당공무원수} \times 1/2$
 11) 기 자 실 : $5\text{㎡} \times \text{출입기자수}$ (동계외)
 12) 티 티 실 : $3.3\text{㎡} \times \text{대수}$ (,)
 13) 행정자료실 : $3.3\text{㎡} \times \text{공무원수} \times 1/10$ (,)
 14) 발 간 실 : $6.6\text{㎡} \times \text{인원수}$ (,)
 15) 이 발 소 : $6.6\text{㎡} \times \text{공무원수} \times 1/100$ (,)
 16) 의 무 실 : $6.6\text{㎡} \times \text{공무원수} \times 1/100$ (,)
 17) 물품창고

(가) 구 : $0.8\text{㎡} \times \text{공무원수}$

(나) 동 : $2\text{㎡} \times \text{공무원수}$

18) 보 이 라 실 : 난방면적 $\times 25/1,000$

3. 지하시설

- 건물면적의 1/4 이상

4.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

구분	계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장실	의 원 사무실	직 원 사무실	기 타
확보 기준		의원수 $\times 6.6\text{㎡}$ + 방청석 (의원수 $\times 2 \times 1.7\text{㎡}$)	의원수 $\times 5\text{㎡}$ $\times 1/2$	구청장 실규모	의원수 $\times 5\text{㎡}$	직원수 $\times 5\text{㎡}$	부속실 공 용 면적등
면적 (㎡)	562 ~ 827	149 ~ 248	33 ~ 66	99 ~ 132	76 ~ 126	26 ~ 50	179 ~ 205

< 착 계 >

< 삭 제 >

현행		기정안	
(별표2)			
지방청사설계규모			
구분	건물연면적	비고	
자치구청사	5,600㎡이상		
동청사	330㎡이상		
※ 건물면적은 장래 전망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삭제〉			

【 별 지 】

별 지								기 경 안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1. 재산의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소재지</th> <th rowspan="2">지번</th> <th rowspan="2">지목 (종목)</th> <th rowspan="2">면적 (수량)</th> <th rowspan="2">공시지가</th> <th colspan="2">현소유자 (점유)</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주소</th> <th>성명</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남 동 구 청 장 귀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공시지가	현소유자 (점유)		비고	주소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1. 재산의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소재지</th> <th rowspan="2">지번</th> <th rowspan="2">지목 (종목)</th> <th rowspan="2">면적 (수량)</th> <th colspan="2">현소유자 (점유)</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주소</th> <th>성명</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남 동 구 청 장 귀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소유자 (점유)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공시지가	현소유자 (점유)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소유자 (점유)		비고																																																																																																																																																																																		
				주소	성명																																																																																																																																																																																			

번	행	기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20 년 월 일 본인이 석출 신고한 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신고재산에 대한 법적 정송이 있을 경우 민·현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신고대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체없이 근거자료를 갖추어 증인으로 출두하겠으며 증인출두로 인한 비용은 일체 청구치 않는다. 3.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석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귀구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명한 보상금을 이를 지체없이 반납한다. 4. 기타 본인이 신고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구의 손해는 지체없이 변상한다.				
〈 서 계 〉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남 동 구 청 장 귀하				

현 명										기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표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종목)	수 량	과제 시가 표 준 액	감정 가격 (㎡당)	평가가격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종목)	수 량	공시 지가 기 표준지	시가표준액	대 정 가 격	감정 가격	매매 실태	평가 가격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위와 같이 평가함 20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미각·미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20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현		영		기		경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역물권)		제 조 자		학 인					
				회 계 명 :									
				종 류									
				재 산 면 적	소재지		지 목						
				주 소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경신기간						
				사 용 료	유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수량	감 가액	현 재 수량	제 가액	기 목	대 조	
기 타													

인		명		계										정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제	조	자	과	단														
				회 계 명 :										명 칭 :																		
				계	산	관	리																									
				종	목		위	연	월	일	방	법	금	액	소	유	자	부	속	서	류	연	혁									
				동	목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문	서	증	가	감	소	현재액																	
									대	호	사	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자	산	재	평	가	년	월	일	재	가	평	가	과	표	또	는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	월	일	차	수	자	성	명	내	용	대	부	기	간	대	부	기	록	대	조	비	고				
비		고																														

- 63 -

현행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생략>	제1조(사용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사용기간) <생략>	제2조(사용기간)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생략>	제3조(사용료)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u>조례 제28조에</u>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 ----- <u>지방재정법과 조례 제28조에</u> -----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u>제3조의 규정에</u>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 ----- <u>조례 제23</u> <u>조의 규정에</u> ----- -----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 <u>제출하여야 한다. 다만,</u> <u>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용 본구에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용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u>
제7조(사용허가 포탈의 부착) <삭제>	제7조(사용허가 포탈의 부착) <삭제>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u>다하여야 한다.</u>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 ----- <u>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u> <u>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u>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생략>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u>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u> <u>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구의</u>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존대하거나 그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생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구 직원의 입회하여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 ----- <u>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u> <u>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u> <u>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번	내	개	경	인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생 탁>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생 탁>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생 탁>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생 탁>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현행과 같음>			
제18조(어구의 해적) <생 탁>	제18조(어구의 해적) <현행과 같음>			

문	항	기	항	안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5조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이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해제·해지할 수 있다.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해제·해지를 ----- ②-----갑이 해제·해지하는-----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제·해지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년 월 일		<이하 현행과 같음>		
임대자(갑) 남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현 병	개 경 안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대 상 자</td><td style="width: 15%;">①성명</td><td style="width: 35%;"></td><td style="width: 15%;">②주민등록번호</td><td style="width: 30%;"></td></tr> <tr> <td></td><td>③주소</td><td></td><td>④전 화 번 호</td><td></td></tr> </table> ⑤ 부 과 · 내 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계 산 의 포 시</th><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점유면적 (㎡)</th><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부과기간</th><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예상변상금 (원)</th></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지 지</th><th style="text-align: center;">지목</th><th style="text-align: center;">지적</th></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귀하	대 상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계 산 의 포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소 지 지	지목	지적																		
대 상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계 산 의 포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소 지 지	지목	지적																																				

번	형	기	경	안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뒷면)		
				※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제		산	관	리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		송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의		견		
		서		또는		
		분		할		
		납		부		
		신청		서		
		작		성		
		제		출		
변		상	금	부		
과		고	지			

현 상	기 정 안																								
〈별지 제23호의2(2)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항 목</th> <th style="width: 40%;">통 지 내 용</th> <th style="width: 40%;">의 견</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7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사유

- 대통령령(1994.12.23 제14447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토록 되어있어, 구·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대통령령(1993.3.12 제16179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및 제3호중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7호중 “경리업무담당”을 “주차관리담당”으로 하며, 동조 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중 “세입관리담당”을 “주차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일원화된 주차장특별회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직을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영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
 - 독립성 강화
 - 책임소재 명백

○ 개정이유

- 현재의 회계관직중 징수관 및 경리관직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개정 (안 제2조 ①항 1호)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5] 를 [별 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WTO체제 이후 농산물 교역 급증으로 인한 가축방역체제의 강화로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의 구민 건강의 안전을 위한 방역체제 구축은 물론 병무위임사무 폐지, 초과현원 해소 등
-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켜 조직운영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구본청에 두는 실·과별 지방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중 총계 “422”를 “419”로 하고, 지역경제과 정원 “20”을 “21”로 하고, 주민자치과 정원 “13”을 “9”로 조정함.(안제2조 별표1)
- 동에 두는 지방 공무원 직급과 정원중 총계 “186”을 “190”로 조정함.
(안 제2조 별표5)

[별표1]

구분청에 두는 실·과별 지방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총 계			419	
기획감사실	계		34	
	일반직	소 계	29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통신1
		7급	14	행정9, 토목1, 전산3, 통신·전자통신1
		8급	5	행정5
		9급	3	전산3
	기능직	소 계	5	
		9급	2	사서1, 교환1
		10급	3	교환1, 조무(조무)1, 전산1
문화홍보실	계		20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5	행정5
		9급	2	행정2
	기능직	소 계	2	
		8급	1	기계1
		10급	1	조무(조무)1
총 무 과	계		30	
	정무직		1	
	일반직	소 계	26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8
		8급	6	행정6
		9급	4	행정4
	별정직	7급	1	비서1
	기능직	소 계	2	
		8급	1	기계1
		9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재 무 과	계		33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3, 전기1, 건축1
		8급	1	행정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23	
		7급	1	기계1
		8급	2	운전2
		9급	5	기계1, 운전3, 조무(조무)사무보조(위드)1
		10급	15	운전14, 조무(조무)1
세 무 과	계		49	
	일반직	소 계	46	
		5급	1	행정1
		6급	6	행정·세무6
		7급	8	세무8
		8급	23	세무22, 전산1
		9급	8	세무6, 행정·세무2
	기능직	소 계	3	
		9급	2	조무(조무)1, 사무보조(필기)1
		10급	1	조무(조무)1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 계	31	
		5급	1	행정·지적1
		6급	3	행정1, 지적2
		7급	7	행정4, 지적3
		8급	14	행정8, 토목1, 지적5
		9급	6	행정6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주민자치과	계		9	
	일반직	소 계	8	
		4급	-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	
	기능직	소 계	1	
		8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사회복지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0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4, 사회복지2
		8급	5	행정1, 사회복지4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별정직	소 계	-	
			-	
	기능직	소 계	2	
		10급	2	사무보조(워드)1, 조무(조무)1
청 소 과	계		24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환경1
		7급	6	행정4, 환경1, 토목1
		8급	5	행정1, 환경3, 보건·환경1
		9급	0	
	기능직	소 계	8	
		10급	8	운전4, 조무(조무)4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1, 행정·보건2, 행정·환경·화공1
		7급	6	행정1, 환경2, 보건2, 환경·화공1
		8급	6	보건3, 화공1, 환경2
		9급	4	행정1, 보건1, 보건·환경2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지역경제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행정·농업1, 행정·화공1
		7급	8	행정2, 농업1, 화공1, 기계1, 수산1, 전기1, 축산·수위1
		8급	8	행정3, 농업1, 수산1, 축산1, 화공1, 기계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정비과	계		38	
	일반직	소 계	34	
		4급	1	시설1
		5급	1	행정·토목1
		6급	6	행정2, 토목1, 토목·건축1, 입업1, 토목·입업1
		7급	14	행정4, 토목6, 입업1, 건축2, 입업·지적1
		8급	7	행정1, 토목4, 건축1, 입업1
		9급	5	행정1, 입업3, 토목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고용직	소 계	3	
			3	고용1종3
건설과	계		36	
	일반직	소 계	26	
		5급	1	토목1
		6급	4	행정1, 토목2, 행정·토목·건축1
		7급	12	행정3, 토목7, 전기1, 건축1
		8급	7	행정1, 토목5, 기계1
		9급	2	토목2
	기능직	소 계	7	
		7급	2	전기1, 기계1
		8급	2	전기1, 기계1
		10급	3	기계1, 조무(조무)2
	고용직	소 계	3	
			3	고용1종3
건축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1	
		5급	1	건축1
		6급	4	행정1, 건축3
		7급	6	건축6
		8급	10	행정2, 건축7, 전기1
		9급	-	
	기능직	소 계	3	
		8급	1	조무(조무)1
		9급	1	건축1
		10급	1	조무(조무)1
	고용직	소 계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교통과	. 계		25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6	행정5, 토목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6	
		9급	2	운전1, 조무(주차단속)1
		10급	4	조무(조무)2, 조무(조무)·사무보조(워드)1, 조무(주차단속)1
	고용직	소계	-	

[별표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총 계			190	
구월1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구월2동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	
			-	
구월3동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구월4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간석1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간석2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전산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기능10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간석3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간석4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8급	3	행정3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만수1동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4
		9급	4	행정1, 사회복지3
	기능직	소 계	-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만수2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전산1
		6급	1	행정·임업·토목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7급	1	조무(조무)1
만수3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4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	
			-	
만수4동	계		10	
	일반직	소 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만수5동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만수6동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3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장수이상동	계		9	
	일반직	소 계	9	
		5급	1	행정·지적·토목·임업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	
			-	
남촌도림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토목·임업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4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남동구청장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화공·기계·환경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조무(조무)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0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7.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2년 7 월 15 일 ~ 2002년 7 월 24일 까지(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2년 7 월 24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경기3오 7201외52대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치장소	비 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188	경기3오7201	엑 셀	김 명 섭	경기부천오정구고강동 209-6조흥빌라6101	구월4동349-484	
191	인천30라1262	엑 셀	신 상 목	인천남동구간석동914-12	만수6동1037	
192	충북1두2565	쏘 니 타	손 병 옥	충북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 리344	구월4동1298	
193	인천3가1829	코란도디젤	강 명 수	인천연수구동춘동943동남 아시4 1507	인천일보대우정비공 업사1077-4도로	
194	서울44마3052	엑 셀	남궁영식	서울양천구신월동926-11삼 성주택(아)지하1호	고잔동낙원가든173- 6	
197	서울2커6867	르 방	서 유 석	서울서초구우면동7번지11 호305나온빌라302	만수4동69놀이터	
199	번호미상	프 린 스			간석4동파출소앞606 -21도로	
200	인천25-8410	프 린 스	전 상 우	인천서구가정동530-4상아 (아)1505호	구월1동1158-6	
201	인천749614	와이드봉고	이 행 호	인천남동구간석동37-235새 빛하이츠빌라2/101호	만수3동산36-1	
202	인천81나3033	화물자동차	최 성 수	인천부평구청천동302-5 37/1	남동공단9613-82동 인산업담장	
203	인천31마8872	쏘 니 타	유 흥 재	인천남동구구월동1264-43	구월4동1256-8	
204	인천80마4964	와이드-봉고	안 기 중	인천간석동224-734 17/4민 영빌라다/B301호	구월1동1189-8유아 (아)	
206	인천30무8553	엑 셀	윤 일 섭	경기도화성시상신리612-5	남촌장미주택담장	
207	충남34라4347	그 렌 저	홍 광 군	충남아산시염치읍송곡리18 1	구월3동1370-6	
208	인천1라9881	엑 셀	이 명 옥	경기도이천시증포동168-1	구월3동1370-6	
209	인천1로2514	프 린 스	송 은 식	인천남동구만수111-21송희 빌라303호	간석1동508-46	
211	인천7가6650	그레이스	(주)동성 관광개발	인천남동구간석동210-9	간석1동317앞도로	
213	인천83가3387	봉 고	박 재 복	인천남구도화동22-545/1	공단165b-12	
214	경기4라3163	쏘 니 타	유 재 영	경기도안산시본오동983-1 33/2	구월2동간석4거리- 모래내시장	
215	번호미상	프라이드			구월동1446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치장소	비 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216	인천7가6875	화물자동차	유 승 민	인천동구화수동285-8 4/3	만수6동1021-4	
217	인천33나2653	크레도스	여 미 화	인천서구가정동500-20 30/5	만수4동53-3	
222	인천31마6395	코 란 도	강 희 섭	인천연수구연수동512-2 3층	만수5동887도로앞	
223	인천31고6234	캐 피 탈	천 인 수	인천연수구옥련동336-20 11/1	구월3동1100-30	
224	경기3무3063	프 린 스	이 명 복	경기도부천시소사구괴안동 산16-7복사골(아)b/503	만수945-18	
225	서울1코6893	엑 셀	김 준 호	서울시중랑구면목동191-8 1층	만수2동수림주유소 옆	
226	인천2로2592	세 피 아	이 성 재	인천남동구간석동905-1원일 빌라A/101	간석1동412-1코너	
228	인천2가4679	쏘 나 타	유 병 은	인천계양구장기동9 2/2	구월3동1384	
231	인천1리2344	쏘 나 타	이 용 하	인천부평구부평동188-8신화 빌라B01호	간석4동578-7	
232	인천7나7961	화물자동차	조 명 회	인천남동구구월동291-6연승 빌라6-B01	구월동1144-10	
235	인천33터4456	엑 셀	박 동 협	인천연수구동춘동929풍림2 차(A)106/706	간석1동317-6	
236	인천31도6583	에스페로	김 태 일	인천남동구간석동37-287약 산빌라6/402	간석3동55-32가천길 대학신한(A)사이길	
237	인천83나1474	엑 셀	임 현 식	인천서구가정동5번지20호이 화빌라1동202호	구월1동1228	
239	인천2머1156	부 쏘	전 낙 순	인천남구용현동568-67 16/4	고잔동631	
240	인천30마4682	머 큐 리	이 선 미	인천동구송림동71-14 12/2	구월1동1134-1	
241	인천3리6228	프라이드	김 성 호	인천연수구동춘동928 3/2현 대(A)113/402	구월1동1134-1	
242	인천7고5707	그레이스6벤	진 성 렬	인천연수구연수동472-6 49/3대건주택B03호		
243	경기8투5651	1 톤포 터	이 재 경	경기도시흥시매화동20 3/6	만수6동607-3이화순 대열공터	
244	경기94도7828	포 터	강 두 원	경기도평택시비전동874 50/1시대한우리(A)103/1601	만수6동감리교회	
246	인천1머1275	트 망	조 보 금	간석37-14 12/1	간석3동224-15	
247	인천31나5360	쏘 나 타	김 윤 숙	인천서구마전동686-118서해 (A)A/101	간석1동416-13	
248	인천80다9167	화 물 차	한 양 순	구월동1266-8상가2	구월체육공원-영진 빌라사이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치장소	비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249	인천30모9048	쏘 나 타	이 정 오	서울중랑구면목동483 15/5 동흥빌라 가/202	간석4동573-1	
252	인천1모6856	프라이드	정 한 숙	충남천안시신방동897두레현대(A)206/506	구월1동1194-7	
253	인천31거8511	쏘 나 타	안 화 영	인천남촌동346-2 10/6 2층 동201호	고잔동184	
255	인천부평나2032	오토바이	이 종 찬		간석3동6-38	
256	인천31가2112	프 린 스	송 인 학	인천남동구고잔동163-5	고잔동서은페차임구	
257	미 상	다 바 스			농수산물센터주변도로	
258	경기2려5933	르 망	박 호 기	인천남동구월동1190-7영흥다세대가 지2호	구월1동1188이화(A)122동사이	
259	번호미상	엑 셀			만수동구정4거리	
260	인천7머1854	마 이 티	김 재 하	인천남구주안57-9 3/4월드보닝빌라(B)01호	만수동구정4거리	
261	충남1호3044	그 렌 저	김 영 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863 9/1	간석동목화예식장플목	
262	번호미상	캐 피 탈			고잔동해양기계앞	